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와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대국민 소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변인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홍보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대변인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정책홍보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3. 12. ~ 3.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음

대통령령 제 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30573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31496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33354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중 “2025년 3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대통령령 제30897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33354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제1항 중 “2025년 7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통령령 제30573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31496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33354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u>2025년 3월 31일까지</u> 존속한다. ② (생략) 대통령령 제30897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33354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대통령령 제30573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31496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33354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 ----- <u>2026년 12월 31일</u>-----. ②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0897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33354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책홍보팀은 <u>2025년</u> <u>7월 31일</u> 까지 존속한다. ② (생 략)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 ----- ----- <u>2026년</u> <u>12월 31일</u> -----.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6